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75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한민수 · 김우영 · 임오경
김기표 · 송옥주 · 홍기원
허 영 · 최민희 · 이용선
이학영 · 박상혁 · 박 정
이연희 · 황정아 · 조정식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

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허가·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양 법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실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제5조 및 제5조의2 삭제).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폐지함에 따라, 그간 법률에 근거 없이 재허가 조건 부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의무화하였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위한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 표준계약서 활용 및 사업자 상호 간 상생협력,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허가 폐지 이후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 편익 증진 등에 관

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송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12조의2·제12조의3·제18조의3 신설).

다. 방송법이 방송사업자가 허가·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라. 방송법이 방송사업자가 법 또는 허가·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위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상생협력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발전과 상생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9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제12조의3(지속가능한 방송환경 조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방송산업의 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9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제18조의3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계약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6조의6, 제7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송법」 제72조의2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제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6조제1항제3호 중 “명령”을 “명령이나 허가조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가한 조건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조정한 조건은 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조건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제1</u> <u>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u> <u>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u> <u>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u><삭 제></u>
<u>제5조의2(재허가) ① 인터넷 멀티</u> <u>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u> <u>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u> <u>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u> <u>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u> <u>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u> <u>한다.</u>	<u><삭 제></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u> <u>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u> <u>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u> <u>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u>1. 이전(以前) 허가 당시의 사업</u> <u>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u> <u>수사항의 이행 여부</u>	
<u>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u> <u>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u> <u>과징금 · 과태료 부과처분의</u> <u>내용 · 횟수와 그 이행 여부</u>	

③ 제1항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의2(상생협력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발전과
상생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92조의4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자”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
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상품 소개와 판
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제12조의3(지속가능한 방송환경
조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방송산업의 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관하
여는 「방송법」 제9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신 설>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 ④ (생략)

<신 설>

업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제18조의3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계약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6조의6, 제7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법」 제72조의2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⑤·⑥ (생략)	<u>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u>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② (생략) 제26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정명령 등) ① ----- ----- ----- ----- ----- ----- ----- -----

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u>명령</u>을 위반한 때 ② ~ ④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 ----- -- <u>명령이나 허가조건</u>----- ② ~ ④ (현행과 같음)
---	---